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변경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5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변경	2
※ 참고자료	6
1.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료 부과 및 구직급여 지급 현황	6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예술인은 1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4.7개월에 불과(2018 예술분야 종사 실태조사)하므로 24개월(2년간) 평균 종사기간 9.4개월을 근거로 규정함.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예술인에 불리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2024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예능 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 예능 작가의 57%가 최근 계약한 근무 기간이 8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했음. 예능 작가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의사로 실직해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50,797명, 2023년 49,126명, 2024년 46,99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예술인도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해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Ⅲ. 검토의견

1.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변경하여, 종전 기준기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을 요하던 것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으로 변경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 ----- ----- -----.
1. 이직일 이전 <u>24개월</u>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u>9개월</u> 이상일 것	1. ----- <u>18개월</u> ----- ----- <u>180일</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을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정하여진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제77조의8제1항제1호에 정하여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경우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인 것과는 차이가 있음.

기준기간이 24개월의 장기인 것은 근로자인 피보험자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면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것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인 것보다 단순히 비례상 더 긴 기여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 대상 예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

예술인의 고용환경과 관련하여, 연극 등의 공연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 공연 기간이 3개월 내외의 단기인 경우가 많은데 공연 전 연습일을 계약상 근무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계약도 다수 존재하여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¹⁾, 예능작가 등 방송 프로그램 작가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을 이유로 단기 계

1) “예술인 고용보험 국회통과…달라지는 것과 여전한 것은”, 뉴시스, 2020. 5. 21.

약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²⁾, 숏폼 콘텐츠 확대 이후 2개월 이내 초단기 계약이 성행하는 등 예술인 고용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지적³⁾ 등이 있는바, 개정안은 취약한 고용환경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당시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인이 프로젝트에 따라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불규칙한 고용 현실을 반영하고자 기준기간을 일반 근로자의 경우보다 장기간인 24개월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피보험 단위기간에 있어서는 예술인의 수급 요건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서는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일반 근로자보다 완화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당시 예술인의 노무제공 특성

2) “‘고용불안’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의무화해야””, 매일노동뉴스, 2025. 2. 17.

3) “숏폼 제작 노동 실태 살펴보니...영상 짧을수록 열악”, PD저널, 2025. 12. 16.

을 고려하고 예술인 관련 단체 등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결정한 것이고, 예술인은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 수급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있으며,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비율이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비율과 비교해 낮지 않은 점, 현재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액보다 구직급여 지급총액이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변경하는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인의 노무제공 특성, 근로자 대비 오히려 완화된 수급 요건 부분과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참고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료 부과 및 구직급여 지급 현황

① 고용보험료 부과 현황(누계)

(단위: 억원)

	23년	24년	25년 11월
근로자	179,394	180,319	167,873
예술인	217	212	183

② 구직급여 지급총액 현황(누계)

(단위: 억원)

	23년	24년	25년 11월
근로자	112,585	116,638	114,722
예술인	220	293	212

* 연장급여 포함

③ 가입형태별 피보험자 수 및 구직급여 수급자 수('25.12월말 기준)

구분	'25년 말 기준	
	피보험자수	수급자수
근로자(천명)	15,494	1,528
예술인(명)	46,555	4,862

*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기준(일용근로자 제외), 예술인은 단기예술인 포함

** 수급자수는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에는 연도별로 각각 포함

*** 피보험자수는 각 연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중 인원